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3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분 추가(노종면의원안)	2

I. 개요

1.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노종면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0. 23.
- (3) 회 부 일 : 2024. 10.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분 추가 (노종면의원안)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대중교통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도서 등	-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현행	노종면의원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소상공인 구입분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신 설></td><td></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신 설>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소상공인</td><td>4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소상공인	4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신 설>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소상공인	4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 공제 한도: (단위: 만원)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 rowspan="3">200</td></tr><tr><td>대중교통</td></tr><tr><td>도서 등</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 전통시장 + 소상공인 = 전통시장등 ○ 공제 한도 (단위: 만원)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 등</td><td rowspan="3">300</td><td rowspan="3">200</td></tr><tr><td>대중교통</td></tr><tr><td>도서 등</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등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등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 노종면의원안 2024. 10. 23. 제출(의안번호 4834)

☐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3)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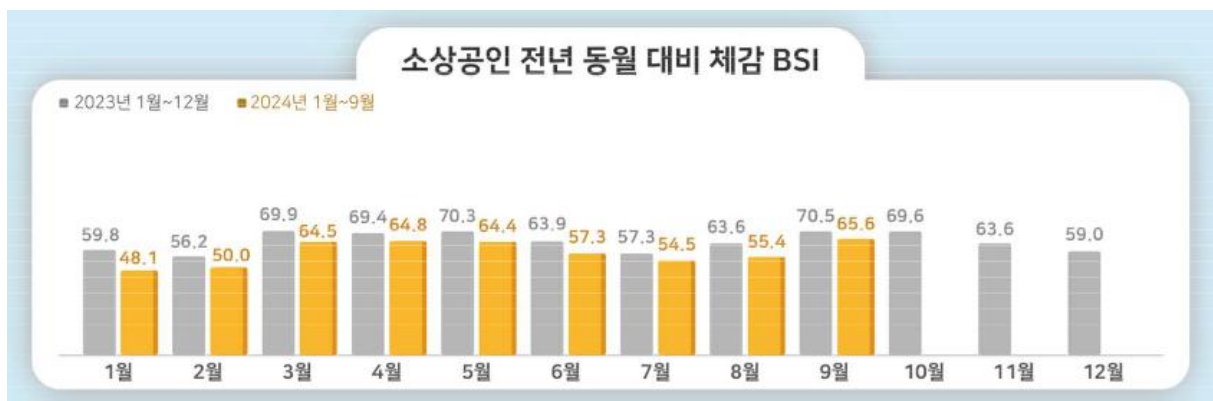
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공제율은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40%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소상공인 체감 BSI⁴⁾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소상공인 전년 동월 대비 체감 BSI 지수]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0.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4) BSI 지수란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는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둘째, 정부는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통 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⁵⁾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412만 5,000개⁶⁾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 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23만 2,206개⁷⁾로 조사되어 전체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비중은 약 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⁸⁾.

따라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소상공인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소비자가 소비 시 소상공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소득공제 집행을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5)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한시 상향하여 적용한바 있음.

6)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7)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8) 참고로 위 조사들에 따를 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714만 3,000명이고, 전통시장 점포 종사자 수는 31만 6,315명으로 전통시장이 약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여부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및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의 요건 중 “상시 근로자” 여부는 근로자의 임원 여부 및 근로기간,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¹⁰⁾되므로 일반 소비자가 소비 행위 시 해당 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사후적으로 소비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

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단서 생략)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각 호 생략)

(* 각호: 일용근로자 3개월 내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각 호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단서 생략)

(각 호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3 생략])

10)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가 소상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전통시장 소비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총 공제한도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및 도서 등 문화비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총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상공인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사용분을 합산하여 총 2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됨.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전통시장에 비해 비대면 주문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다른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역시 전통시장사용분 등과 합산하여 적용되는데, 이 경우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였을 물품을 다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 제도의 도입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감면액이 약 3조 1,675억원¹¹⁾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간 총 매출액은 전통시장의 연간 총 매출액의 약 24.9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4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22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액 비교]

구 분	사업체 수	연간 총 매출액
소상공인	4,125,000개	965조 2,500억원
전통시장	232,206개	38조 8,179억원

자료: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문 의 처

02)6788-5154

11)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3조 9,458억원에 달함.